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러시아,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의 디지털 라벨 시범 적용 기간 및 의무 적용 일정 확정(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 적용)



TBT

이슈 바로가기 ▶

- 러시아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량음료 등에 대한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시범 적용 기간이 시행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이 의무화됨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 :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상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
- 비알코올성 음료 대상 품목 : 청량음료(탄산, 당류 첨가 포함), 주스, 착향음료, 식물성 원료 음료, 과일 또는 견과 주스, 야채주스, 비발효 및 논알콜 음료 등, 과일과 베리류 콩포트(과일을 설탕에 졸여 만든 디저트), 크바스(호밀과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저알코올 음료), 과일 음료
- 주요 내용(의무 적용 일시)

(*) 제품 포장 유형에 따라 체스니 즈낙 라벨링의 의무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됨

포장 유형	의무 적용 일시
유리, 폴리머 포장 청량음료 (주스, 과일즙, 두유 등 식물성 음료 및 콩포트 제외)	2023년 12월 1일 ~
알루미늄을 포함한 캔 음료 (주스, 과일즙, 두유 등 식물성 음료 및 콩포트 제외)	2024년 3월 1일 ~
모든 유형의 포장에 담긴 비알코올성 음료 (주스, 과일즙, 두유 등 식물성 음료 및 콩포트 포함)	2024년 6월 1일 ~

출처 :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러시아 식량정책 동향: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계획 확정, 질소비료 수출쿼터 연장 등, 2023.06.10

(*) 3대 신식품 : 식품원료(군주제외) 신식품종, 식품첨가제 신식품종, 식품관련(식품접촉물질 포함) 신식품종

중국,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등 3대 신식품(三新食品) 14종 발표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2023년 5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3대 신식품(三新食品)" 14종을 최종 발표함
- 3대 신식품 14종 중 신식품원료 2종의 상세 사용 기준(일부)

원료명	권장섭취량	사용범위	사용제한량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Blueberry anthocyanin)	≤800mg/1일	조제우유와 발효우유	0.8g/kg
		액체음료	0.8g/kg
		냉동음료	8g/kg
		코코아 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14g/kg
		베이커리	4g/kg
		주류	4g/kg
호밀 꽃가루 (Rye pollen)	≤1.5g/1일	(*) 영유아, 임산부, 수유기 여성 및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자는 섭취에 적합하지 않으며 라벨과 설명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표시해야 함	

(*) 이외에 식품첨가제 6종, 식품 관련 신식품종(식품 접촉 물질) 6종이 추가되었음



SPS

이슈 바로가기 ▶

출처 : 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 关于蓝莓花色苷等14种“三新食品”的公告, 2023.05.06

중국, 관리대상식품 18종 관련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 서류 보완 요청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 18가지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의 해외생산기업은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해관총서 등록시스템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주요 내용(대상 품목 및 보완 자료 종류)
- 대상 품목 : 18가지 추천등록 유형(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 수산품,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 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 보완 자료 종류 : 소재 국가 주관 당국의 추천서,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 증명 서류, 소재 국가 주관당국에서 발급한 심사보고서, 등록업체의 적합성 증명서 등의 자료 포함

(*) 해관총서에서 정식 공지는 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해당 자료 미제출 시 해당 등록번호가 잠시 정지되어 중국 수입 통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출처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제 7조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 무기비소: 산소, 황, 염소 등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형태로 발견되는 비소

미국, 사과 주스 중 무기 비소 조치 수준에 관한 최종 지침 발표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는 산업 지침「사과 주스 중 무기 비소 조치 수준」을 발표함
- 배경: 해당 지침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통해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FDA의 목표가 담겨 있음
- 주요 내용(추진경과 및 최종 지침 내용)
 - 추진경과: FDA의 검사 결과 시판 사과 주스 중 무기 비소의 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ppb와 5ppb 미만의 검사 결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지침 초안이 발표된 후 10ppb 이상인 사과 주스 샘플이 확인됨
 - 최종지침: FDA는 우수제조관행(GMP)을 활용하여 해당 수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 수준을 10ppb로 결정함**
 - 10ppb 조치 수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FDA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사과 주스 중 무기 비소 수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SPS

출처: FDA, Guidance for Industry: Action Level for Inorganic Arsenic in Apple Juice, 2023.06.01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 및 유해물질 5종의 강화된 최대 함량 기준 발표

(*) 진균독소: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SPS

이슈 바로가기 ▶

- 홍콩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툴린)과 기타 유해물질 5종(벤조피렌,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멜라민, 3-MPCD, 에루스산)의 최대 함량 기준을 강화한 조항을 발표함
- 식품 중 진균독소 최대 함량 기준(일부)

물질명	대상 식품	최대 함량 기준
아플라톡신M1	12개월 미만의 영아 및 영유아용 조제유	식품 1kg당 0.025µg
	기타 우유 및 분유	식품 1kg당 0.5µg
데옥시니발레놀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곡물 기반 식품	식품 1kg당 200µg

- 식품 중 기타 유해물질 최대 함량 기준(일부)

물질명	대상 식품	최대 함량 기준
벤조피렌	신선 혹은 미사용 식용유나 지방	식품 1kg당 5µg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조제 분유	식품 1kg당 1µg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분말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조제 분유	식품 1kg당 50µg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액상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유동식	식품 1kg당 6µg

(*) 위반 시 조치사항: 각 유해물질별 최고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 위탁, 납품, 제조를 엄격히 금지함

출처: 홍콩 정부 공식 보도 사이트(info.gov.hk), 2021年食物內有害物質 (修訂) 規例》今日起分階段生效, 2023.06.01

일본, 옥수수, 수박, 굴 등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개정 사항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5월 31일, 아세퀴노실, 모사프리트 등을 포함한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개정한「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안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을 발표함
- 시행일: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함(고시일: 2023년 5월 31일)
- 수출 가능 품목 대상 잔류 기준 일부 개정사항



SPS

이슈 바로가기 ▶

대상 성분	식품명	잔류기준치(일률 기준 0.01)	
		잔류기준치(개정 전) (ppm)	잔류기준치(개정 후) (ppm)
아세퀴노실(살균제)	옥수수	-	0.02
	수박	0.1	-
	수박(과피포함)	-	0.5
이소페타미드(살균제)	팥류, 기타 콩류	0.05	0.09
	팥(부추 포함)	-	0.6
피리독시펜(살충제)	바나나	-	0.7
메톡시페노지드(살충제)	팥(부추 포함)	3	2
	차	40	70

(*) 잔류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함

(*) 수박, 굴 구아바 등 일부 식품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자세한 성분별 대상 식품은 해당 개정안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生活衛生・食品安全審議官,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3.05.31